서류 disclaimer_2023.07.17			
구분	서류명	제출 조건	
개인사업자	대표자 신분증	- 신분증(앞면) 정보 (마스킹 없이 제출)	
		- 주민등록증 / 운전면허증 허용	
		※ 주민등록증 미발급 미성년자	
		- 학생증 혹은 청소년증+주민등록등(초)본 혹은	
		가족관계증명서	
		(공동대표자) 공동대표자 2 인의 신분증 제출	
		(외국인 대표자) 아래의 항목 중 선택 제출 가능	
		- 외국인등록증 (앞뒷면 필수 제출)	
		-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(앞뒷면 필수제출)	
	사업자등록증 사본	- 마스킹 없이 제출	
	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- 마스킹 없이 제출	
		- 발급 90 일 이내	
		※ 사업자등록증명원 :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	
		최신의 사업자 정보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명원을 제출바랍니다.	
		《홈택스 > 민원발급 >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> 즉시발급가능)	
영리법인(비상장)	사업자등록증 사본	- 마스킹 없이 제출	
	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- 마스킹 없이 제출	
		- 발급 90 일 이내	
		※ 사업자등록증명원 :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	
		최신의 사업자 정보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명원을 제출바랍니다.	
		(홈택스 > 민원발급 >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> 즉시발급가능)	
	법인등기부등본	- 발급 3 개월 이내 (열람용 제출 불가)	
		- 등기부등본 전 페이지 첨부	
	주주명부	- 법인 인감날인 필수	
		- 3 개월 이내 확인된 주주명부 제출 필수	
		- 주주명부 확인이 어려운 해외법인의 지사의 경우	
		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제출해주세요.	
영리법인(상장,금융회사)	사업자등록증 사본	- 마스킹 없이 제출	
	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- 마스킹 없이 제출	
		- 발급 90 일 이내	
		※ 사업자등록증명원 :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	
		최신의 사업자 정보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명원을 제출바랍니다.	
		(홈택스 > 민원발급 >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> 즉시발급가능)	

	법인등기부등본	- 발급 3 개월 이내 (열람용 제출 불가)
		- 등기부등본 전 페이지 첨부
비영리법인/기관/단체	고유번호증 사본	- 마스킹 없이 제출
	법인등기부등본	- 발급 3 개월 이내 (열람용 제출 불가)
		- 등기부등본 전 페이지 첨부
	정관	- 법인인감날인 필수
		- 설립목적의 확인 가능해야 함
	또는 출자자명부, 회칙,	- 변경사항(상호명, 본점이전, 발행주식총수, 목적 등)
	규약, 당선증, 회의록 등	있는 경우, 최종 변경된 정관 첨부
		- 3 개월 이내 확인된 서류 제출 필수
정부기관(국가, 지자체, 관공서 등)	사업자등록증 사본	- 마스킹 없이 제출
	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	- 마스킹 없이 제출
		- 발급 90 일 이내
		※ 사업자등록증명원 :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
		최신의 사업자 정보확인이 가능하므로 해당 증명원을 제출바랍니다.
		세출미립니다. (홈택스 > 민원발급 >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> 즉시발급가능)
공통(개인사업자, 법인, 기관/단체, 정부기관 )		- 위임장
		※ 카페 24 페이먼츠의 계좌이체, 가상계좌 서비스도 이용하실경우,
		토스페이먼츠의 위임장도 추가로 첨부해주세요.(FAQ 본문참조)
	공동대표 추가서류	- 인감증명서(3 개월 이내 발급)
		- 개인사업자 : 공동대표자의 신분증(마스킹없이 제출)
		※ 개인사업자 : 인감증명서 없을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
		제출(마스킹없이 제출/ 3 개월 이내 발급)
		※ 각자대표의 경우, 추가서류 제출 미해당

『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』제 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외국인등록번호) 중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수집 및 확인할 수 있으며, 법령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서만 이용합니다.